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39 발 의 년 월 일: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:정진술, 강동길, 김성준, 박강산, 박승진, 박유진,

박강산, 박승진, 박유진, 박칠성, 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 이병도, 이상훈, 이소라, 이용균, 정준호 의워(15명)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정책의 개발과 제안, 정책의 평가와 감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.
- 한편, 서울특별시의회는 「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동 규칙이 토론회 등의 개최 신청 주최를 '위원회' 또는 '의원' 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, 토론회 등의 신청과 지원대상에 '교섭단체'를 포함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토론회 등 개최 주체에 교섭단체를 추가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교섭단체의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함(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」, 「서울 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"를 "위원회,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또는 교섭단체가"로 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: 정책기획담당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<u>위원회 또</u>	제4조(신청 및 승인) ① <u>위원회,</u>
는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	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
한다)이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	<u>다) 또는 교섭단체가</u>
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	
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	
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	
제출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관리) ① (생 략)	제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	②
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
	항에 대한 토론회 등 : 정책기
	획담당관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